

평택역 더센트럴45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031-654-265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1.09.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09.(목)	2026.07.20.(월)	2026.07.21.(화)	2026.07.22.(수)	2026.07.29.(수)	2026.07.31. (금) ~ 2026.08.04. (화)	2026.08.10. (월) ~ 2026.08.12. (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 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09.(목)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 (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 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 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자격요건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		1순위(12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			가입	
세대주요건	-	-	필요	-	-	-	-
소득또는자산기준	-	적용	-	적용	적용	-	-

※ 1순위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주택 (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함 (예)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선정	예비입주자선정	동호수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hecentral45.com>)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단, **미성년자녀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수 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기한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없이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종전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경기도 평택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100%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본 분양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시행자)와 수분양자가 1/2씩 균등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자료실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0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6.01.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7.20.(월)	2026.07.21.(화)	2026.07.22.(수)	2026.07.29.(수)	2026.07.31. (금) ~ 2026.08.04. (화)	2026.08.10. (월) ~ 2026.08.12. (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00) ■ (현장접수)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0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10, 103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PC·모바일) 청약만 가능(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요건이 소멸하여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 건축허가과 - 24737 (2026. 7. 8.)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45-1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5층 ~ 지상 24층 1개동 / 총 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6세대(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17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0세대, 신생아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145대 (공동주택 : 117대, 근린생활시설 : 28대)
- 입주시기 : 2026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336	01	079.9213	79	79.9213	40.8920	120.8133	45.3783	166.1916	10.2449	19	2	2	-	2	1	7	12	1
	02	084.5994A	84A	84.5994	42.1336	126.7330	48.0344	174.7674	10.8438	19	2	4	1	3	2	12	7	1
	03	084.6767B	84B	84.6767	42.6344	127.3111	48.0783	175.3894	10.8537	19	2	4	1	2	1	10	9	1
	04	084.7673C	84C	84.7673	42.4285	127.1958	48.1298	175.3256	10.8653	19	2	4	1	2	1	10	9	1
	05	084.9764D	84D	84.9764	42.0071	126.9835	48.2485	175.2320	10.8921	8	2	3	-	1	1	7	1	1
	06	084.7673P	84P	84.7673	42.4285	127.1958	48.1298	175.3256	10.8653	1	1	-	-	-	-	-	1	-
	07	110.9626P	110P	110.9626	55.2674	166.2300	63.0032	229.2332	14.2230	1	1	-	-	-	-	-	1	-
	08	125.2266	125	125.2266	60.0166	185.2432	71.1021	256.3453	16.0532	11	11	-	-	-	-	-	11	-
	09	125.2266P	125P	125.2266	60.0178	185.2444	71.1018	256.3462	16.0556	1	1	-	-	-	-	-	1	-
	10	152.0764P	152P	152.0764	75.0503	227.1267	86.3470	313.4737	19.4935	1	1	-	-	-	-	-	1	-
합 계										99	10	17	3	10	6	46	53	5

- ※ 본 아파트 최저층 세대는 5층입니다.
-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중소형평형 위주의 소규모 단지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세대를 중소형 평형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산 배정합니다.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내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79.9213	084.5994A	084.6767B	084.7673C	084.9764D	084.7673P	110.9626P	125.2266	125.2266P	152.0764P
약식표기	79	84A	84B	84C	84D	84P	110P	125	125P	152P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79	84A	84B	84C	84D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	1	1	1	1	5
	기타지역 거주자(50%)	1	1	1	1	1	5
신혼부부 특별공급		2	4	4	4	3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1	-	3
생애최초 특별공급		2	3	2	2	1	10
신생아 특별공급		1	2	1	1	1	6
합 계		7	12	10	10	7	4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세대)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1차	2차	입주지정일
									계약시	14일 이내	
79	19	2호	5층	1	189,720,000	337,280,000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474,300,000
			6층	1	191,880,000	341,120,000	-	533,000,000	10,000,000	43,300,000	479,700,000
			7~9층	3	194,760,000	346,240,000	-	541,000,000	10,000,000	44,100,000	486,900,000
			10~14층	5	195,840,000	348,160,000	-	544,000,000	10,000,000	44,400,000	489,600,000
			15~17층	3	196,920,000	350,080,000	-	547,000,000	10,000,000	44,700,000	492,300,000
			18~20층	3	197,280,000	350,720,000	-	548,000,000	10,000,000	44,800,000	493,200,000
			21~23층	3	198,000,000	352,000,000	-	550,000,000	10,000,000	45,000,000	495,000,000
84A	19	3호	5층	1	205,560,000	365,440,000	-	571,000,000	10,000,000	47,100,000	513,900,000
			6층	1	207,720,000	369,280,000	-	577,000,000	10,000,000	47,700,000	519,300,000
			7~9층	3	210,960,000	375,040,000	-	586,000,000	10,000,000	48,600,000	527,400,000
			10~14층	5	212,040,000	376,960,000	-	589,000,000	10,000,000	48,900,000	530,100,000
			15~17층	3	213,120,000	378,880,000	-	592,000,000	10,000,000	49,200,000	532,800,000
			18~20층	3	213,480,000	379,520,000	-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33,700,000
			21~23층	3	214,200,000	380,800,000	-	595,000,000	10,000,000	49,500,000	535,500,000
84B	19	1호	5층	1	208,800,000	371,200,000	-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22,000,000
			6층	1	210,600,000	374,400,000	-	585,000,000	10,000,000	48,500,000	526,500,000
			7~9층	3	213,840,000	380,160,000	-	594,000,000	10,000,000	49,400,000	534,600,000
			10~14층	5	214,920,000	382,080,000	-	597,000,000	10,000,000	49,700,000	537,300,000
			15~17층	3	216,000,000	384,000,000	-	600,000,000	10,000,000	50,000,000	540,000,000
			18~20층	3	216,720,000	385,280,000	-	602,000,000	10,000,000	50,200,000	541,800,000
			21~23층	3	217,080,000	385,920,000	-	603,000,000	10,000,000	50,300,000	542,700,000
84C	19	5호	5층	1	210,600,000	374,400,000	-	585,000,000	10,000,000	48,500,000	526,500,000
			6층	1	212,760,000	378,240,000	-	591,000,000	10,000,000	49,100,000	531,900,000
			7~9층	3	216,000,000	384,000,000	-	600,000,000	10,000,000	50,000,000	540,000,000
			10~14층	5	217,080,000	385,920,000	-	603,000,000	10,000,000	50,300,000	542,700,000
			15~17층	3	218,160,000	387,840,000	-	606,000,000	10,000,000	50,600,000	545,400,000
			18~20층	3	218,520,000	388,480,000	-	607,000,000	10,000,000	50,700,000	546,300,000
			21~23층	3	219,240,000	389,760,000	-	609,000,000	10,000,000	50,900,000	548,100,000

84D	8	4호	5층	1	196,200,000	348,800,00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490,500,000
			6층	1	198,360,000	352,640,000	-	551,000,000	10,000,000	45,100,000	495,900,000
			7~9층	3	201,600,000	358,400,000	-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04,000,000
			10~12층	3	202,680,000	360,320,000	-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06,700,000
84P	1	4호	24층	1	252,720,000	449,280,000	-	702,000,000	10,000,000	60,200,000	631,800,000
110P	1	1호	24층	1	319,320,000	516,072,730	51,607,270	887,000,000	10,000,000	78,700,000	798,300,000
125	11	4호	13~14층	2	295,560,000	477,672,730	47,767,270	821,000,000	10,000,000	72,100,000	738,900,000
			15~17층	3	297,360,000	480,581,820	48,058,180	826,000,000	10,000,000	72,600,000	743,400,000
			18~20층	3	297,720,000	481,163,640	48,116,360	827,000,000	10,000,000	72,700,000	744,300,000
			21~23층	3	298,800,000	482,909,090	48,290,910	830,000,000	10,000,000	73,000,000	747,000,000
125P	1	3호	24층	1	332,280,000	537,018,180	53,701,820	923,000,000	10,000,000	82,300,000	830,700,000
152P	1	2호	24층	1	420,840,000	680,145,450	68,014,550	1,169,000,000	10,000,000	106,900,000	1,052,100,000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도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p>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 제출 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style="color: red;">-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p>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청약통장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평택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50%)**
-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평택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평택시 및 경기도 물량의 낙첨자가 기타지역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기간(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2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1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09.(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2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p>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p>■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4-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p> <p>-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p> <p>■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p>-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7">32</td> <td>만 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0년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0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0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0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0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0년 미만	3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0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0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0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0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0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0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0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0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0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0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0세대
-----	--------------------------------	---------------------------------

구분	내용
----	----

<p>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93 882 2130 1295">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우선공급 (50%)</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일반공급 (20%)</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3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0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선정방법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09.(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0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0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0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0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0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0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0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0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0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0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6.07.20.(월) 09: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10, 103호)
일반공급	1순위	2026.07.2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6.07.22.(수) 09:00 ~ 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 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가 가능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r> </tbody> </table>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불가</p>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29.(수) ~ 2026.08.0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7.2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6.07.31.(금) ~ 2026.08.04.(화) 10:00~17:00	평택역 더센트럴45 분양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10, 103호)	-
-------------------------------	--	---	---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 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양식 : 분양홍보관 비치)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및 출산특례('24.06.19 이후 태어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신청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표기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표기하여 발급
	○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신생아 특별공급	○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표기하여 발급
	○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양식 : 분양홍보관 비치)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기존주택 처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서약서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양식 : 분양홍보관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자 중 혼인중이 아닐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자로 만 18세 이상“미혼인 자녀”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분양홍보관 비치)	
일반공급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성명 전부 표기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가점제 청약자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 받은 자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자격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당첨사실 소명여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분양홍보관 비치)
	-	○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5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25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25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 전년도(25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25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25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2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와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25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25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5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① 분양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08.10.(월) ~2026.08.12.(수) 10:00~16:00	평택역 더센트럴45 분양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10, 103호)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	자격검증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분양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각각 50%씩 균등 납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 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	------	------	-----

계약금1차, 2차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923503	코리아신탁(주)
잔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304-923503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501 호 홍길동 → 15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홍보관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 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③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3) 위축지역 : 3개월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 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 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p> <p>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p> <p>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p>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p> <p>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대금 및 납부 일정

약식표기(타입)	총 공급금액 (V.A.T. 포함)	계약금(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79	16,400,000	1,640,000	14,760,000
84A	17,700,000	1,770,000	15,930,000
84B	19,200,000	1,920,000	17,280,000
84C	19,100,000	1,910,000	17,190,000
84D	15,700,000	1,570,000	14,130,000
84P	19,100,000	1,910,000	17,190,000
110P	24,100,000	2,410,000	21,690,000
125	15,700,000	1,570,000	14,130,000
125P	15,700,000	1,570,000	14,130,000
152P	29,300,000	2,930,000	26,370,000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504-916429	코리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사업주체와 계약자 100%씩 각각 납부)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호 : 서명란에 "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당 상품은 준공 후분양제 적용으로 전 세대 일괄 확장이 적용, 시공되었으므로 별도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 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광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또는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 시 고지된 입점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에 청구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들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영업개시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등)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분양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 실 등), "분양홍보관" 내 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에 제작, 배포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및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에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외부 전경은 호실별, 층, 위치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방문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시공여건 및 실시계획변경 등에 따른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조명, 사인물, 조명시설, 배수설비, 부대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부대시설 운영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 보수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 A/S센터 (가칭)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 (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호실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각종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공원, 기반시설(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등)은 해당기관의 개발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주변의 건축물 신축되는 경우 호실간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변경, 계약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홍보물 및 모형과 차이가 있으니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불법 구조변경 시 법적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된 가전, 조명 등은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이유로 감액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실, 기계실, 우수조 등의 시설에 인접한 일부호실은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설비배관, 가스, 덕트, 소방배관, 전기트레이 등)등 타 호실 및 공용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통합 운영되는 부분의 각 시설물은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설별 운영 주체 간 협의에 따라 운영, 유지보수 등의 분담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복합시설의 특성 상 각 시설별 공간에 타 시설용도의 설비, 전기라인 등의 시설물이 설치, 통과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VR영상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공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시행주체 및 각종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의 계약에 대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들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의 누락 및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거주 외국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분양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입주자에 대한 용자 지원

- 당 건축물은 준공 후분양 상품으로 별도의 용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내·외부 여건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6년 4월 24일 사용승인을 완료하여 실물이 존재합니다. 수분양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 사용승인 시 최고 층수는 24층이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 4층입니다.
- 본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 본 목적물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축법 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호실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호실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호실은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 음영 호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도로 및 인접건물,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위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준공된 실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출입구는 1개소로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자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량 통로 유효높이는 지하 1층은 2.7m, 지하 2~5층 2.3m로 지하 2~5층의 경우 일반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지하 및 옥상 등 외부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탈취설비, 실외기 등) 및 건물형태, 위치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줄눈 및 각 액세서리의 위치는 유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에 면한 호실 또는 인근 호실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CG와 외관의 색상 및 디자인, 경관조명 및 마감재 종류는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부지와 인접한 건물과의 프라이버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기탑 및 쓰레기 수거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당 건축물의 전용 오수관로는 평택동 31-1(도) 하부의 시 공용 오수관로까지 약 60m 구간 연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막힘, 파손 등에 따른 통수 및 준설 등 유지보수 책임이 수분양자(실사용자 및 상가관리단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스마트관망 구축 관련 공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쓰레기처리장이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호실은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 내 천장 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전기/통신/가스·위생·공조 배관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의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계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준공된 실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호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점검구의 개폐를 위해 화물적재 및 가구설치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간 경계 벽 및 바닥구조(층간음 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향후 층간 또는 호실 간 벽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상 1층에 급배기 시설, 맨홀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야간조명 효과, 차량 진, 출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DA 급배기구,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 빛 반사,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조경부의 환기설비 및 공조 설비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은 전사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설치 위치, 주방배기설비 위치 등 호실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샴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음식물조리 등)에 의한 습기 발생,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등 적정 상대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샷시 및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에 의한 결로 취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 호실에는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호실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탑 및 지상, 지하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됩니다.
- 지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재연 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환기구는 일부 저층 호실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전기실, 팬룸, 기계실, 발전기실, 재연 팬룸, 우수조, 정화조 등에 인접한 호실은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인접 건물로 인해 특정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준공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 시설물 사용 시 영업개시 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타일 및 석재, 시트지는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호실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과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계약 이후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출입구, 근린생활시설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경우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의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 반드시 준공된 실물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실제 시공된 옥상 구조물의 높이가 시공 시 안전을 위해 조감도, 홍보물,의 이미지 및 홍보관 내 전시된 건물 모형과 비교할 때 최고점 기준 약 2m 낮게 시공되었으므로 준공 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팬, 소화수조 및 기타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 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사전에 사업부지 내의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상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개발계획 및 주변건물 신축에 따라 계약호실이 속한 층 향에 따라 일조,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실별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냉난방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승강식피난구, 탈취설비, 실외기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진동 및 미관 등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배관 및 덕트 등의 설비 유체 흐름에 따른 진동·소음 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연덕트 급·배기구 설치로 호실 간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건물 내 방범, 보안,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건물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점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점자 및 입점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공동주택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호실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 설치를 대체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하였으므로 건물 내 미술장식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으로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 서측에 위치하던 버스승강장(15708, 팽택역.AKPLAZA)은 현재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이전하였으나 향후 기존 위치인 사업지 서측으로 재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이전 여부, 시점 등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님) 재이전 시 본 사업지 대지 중 일부가 버스승강장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공공시설물 (버스승강장, 보행로, 신호등, 불라드, 점자블럭, 표지판,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포함함.)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이용료 또는 점용료,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제3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무상 사용 승낙의 간주), 필요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대지 내에는 전력 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중공급설비(변압기, 개폐기 등) 설치 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필요시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 용도로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 협의 후 해당 공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전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 출입하여 복구 조치한 후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디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본 건물의 냉난방 사용요금은 전력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이 부과되며, 공용부분은 별도 계량 후 전체 호실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설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됨을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에는 「소방법」에 따른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호실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설치 위치, 크기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향후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고지사항

- "분양홍보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준공된 실물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 실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분양홍보관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타사 또는 시공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준공된 실물, 평면도, 배치도, 준공된 실물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입주일령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단지모형,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 방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룸, 맘즈&키즈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 및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계약 전 실제 시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이 변경되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2년 8월 건축허가(변경)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되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로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제외된 품목이나 기본 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CG,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분양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준공된 실물,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내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관련 도면에 기초하여 CG로 제작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를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물(카탈로그, 팸플릿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 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공된 실물,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및 분양홍보관 관련

- 샘플하우스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샘플하우스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각종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 및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식탁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가 설치된 84C타입과 유사 주택형(84A,B)은 각 공간별 면적이 다소 상이하므로 반드시 실물 확인 및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샘플하우스 내부는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벽면 게시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니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은 사용승인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최종 준공된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도로 및 단지 외부 여건

- 사업지 서측에는 평택1로, 북측, 북동측에는 평택2로가 접하여 차량 소음, 진동 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의 평택2로 평택역오거리~박애병원 구간에는 현재 평택시 주관으로 차없는 거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및 완료 시 당 건물로의 차량 진입 동선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부지의 현황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댐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근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사업지 주변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수원발 KTX,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등 사업지 주변으로 신설이 예정된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GTX A, C 노선의 평택 연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추진 중단, 취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 개발계획 (재개발, 재건축, 원도심 정비계획 등)은 관계 기관, 지자체의 정책 변경,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위치 및 현황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인접한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여건 [단지배치 및 지상부]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의 건축물 신축, 동간 또는 세대간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계약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에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환풍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설치되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층에 맘스&키즈카페와 키즈 정원, 운동시설 등 주민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북동측에 차량진출입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차량 소음, 진동, 차량출입 경고음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지는 보행통로(사잇길) 조성 예정으로 보행자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시 홍보물 및 모형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 내·외부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추가설치 요청의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주변으로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통행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단지 진출입 보행동선과 관련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 최상층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탑층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비주거시설(PIT 등), 공동주택 외벽 등에 따른 빛의 산란,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로 인하여 하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하여 이에 따른 소음, 진동,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에 환기구(기계실, 환풍, 제연환풍 등)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층 공용부에는 해당층 세대 수 이상의 창고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고공간은 각 세대 별 현관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1소 이상을 설계했지만, 해당 공간은 공용면적의 일부로서 입주자는 특정 창고에 대한 점유와 독점사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활용과 관련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용해야 합니다.
- 단지의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사용이 불가하며,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건물 간판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 및 최상층 일부 세대, 대피공간 인근 세대는 단위세대 방법을 위하여 방법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운행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기계실, 전기실, 제연헬룸 등 단지 운용을 위한 설비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장비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추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오수 배출 및 오수관로 연결을 위한 맨홀이 설치되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평택시청, BTL업체 등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되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상부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5층, 5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발전기실 / 전기실 / 저수조 / 빗물저수조 / 펌프실 등 각종 설비시설이 지하 5층 아래 PIT층에 시공되어 있어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의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헬 등의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헬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건축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이 하나의 차량진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 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유효높이 상향 등 현 시공된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량 통로 유효높이는 지하 1층은 2.7m, 지하2~5층 2.3m로 지하 2~5층의 경우 일반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며, 지하 1층의 경우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홀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구역별) 설치되었으며,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 1층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었습니다.

[부대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은 시행위탁자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내부마감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용도, 실별 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였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휘트니스, 맘스&키즈카페, 게스트룸, 공용오피스, 독서실 등
- 부대시설(맘스&키즈카페와 키즈 정원, 운동시설 등)은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며, 운영 및 관리, 내부마감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시공 및 운영관리 해야 합니다. 또한 집기 및 비품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자체 비용으로 시공 및 구비하여야 함)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준공된 실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천장고는 2.35m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전 세대 일괄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 드레스룸 및 욕실 위치로 습기에 취약할 수 있으니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서비스 면적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위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 또는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 (가스배관은 노출), 환기시스템(설비시설노출), 분전반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마감 재료는 (준)불연재 이상 사용합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치수로 실 시공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 및 바닥(침실, 욕실, 발코니, 거실 등)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구조 OPEN 처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크기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작업통로는 작업완료 후 내화구조로 폐쇄됨)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PD, AD 내부에는 미장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각 세대 및 공간별로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욕실가구(욕조,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에는 일부 파지타일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된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및 위치는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고 계약 또는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박스 등의 실제 시공위치를 준공된 실물을 통해 확인하시고 계약 또는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사 타현장 및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판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 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채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 단차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로서 별도의 줄눈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성품 자기질 타일이지만 문양 및 명도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이질재질 접합부(콘크리트, 조적)가 있으며, 크랙 유도를 위한 줄눈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층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합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고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용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일부 변경되어 실제 시공되었을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부장 후면은 천장 몰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수전, 우수 선출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준공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대변기 및 세면대 하부는 물 사용이 적고, 화장실 특성상 경사도가 많이 높아 질수 없어, 일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상층세대에서 물 사용 시 욕실상부 배관으로 통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하층(5층)의 경우 배관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FSD도어의 열림이 주변 벽체 및 가구 배치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전기, 통신 배선 및 설비배관 등 임의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책임은 임의시공 주체에게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구(자동문) 개폐 방향은 장애인 법적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기계 설비 및 시스템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되어 시공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인접세대 및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5항의 1호에의거 공동주택의 거실은 조기반응형 헤드가 설치되며, 상층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세대 내 각실의 내창으로부터 0.5M 이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설치됩니다.
- 방화구획 벽체 및 층간 배관 관통부분 등은 내화충진재가 적용됩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일부 최상층 세대 (PH타입)의 다락 지붕 상부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2026년 08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된 후분양 주택이나, 계약 체결 후 내부 최종 마감공사 마무리 및 안정적인 입주 지정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월을 2026년 08월로 지정합니다. 실제 입주개시일 및 세부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 1개월 전 수분양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후분양 단지의 특성상 입주지정기간은 통상적인 선분양 단지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본 단지는 2026년 4월 24일 사용승인을 완료하여 실물이 존재하며,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한 사전방문 대상이 아닙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2.3M	2.7M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 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70(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인증받은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녹색건축 인증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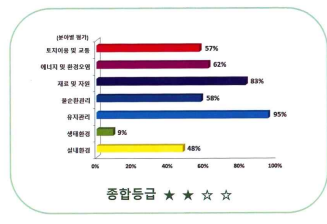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다산트윈45	인증번호	: G-SBED-C-2026-0514-9
건축주	: 코리아신탁(주)	인증일자	: (시행)2026년 04월 22일
승인(예정)일	: 2026년 4월 27일	유효기간	: 2026. 06. 18 ~ 2036. 06. 17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1로 10 (평택동45-1단지)	인증 등급	
층 수	: 지하 5층, 지상 24층	인증등급	: 우량(2급)등급
연면적	: 23,318.2886㎡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건축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인증기준부 고시	: 제2021.12.2호
실적자	: ㈜한국에너지서비스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공사장주	: 파인건설(주)		
공사감독자	: 소희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으며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6월 18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0260427	인증일자	: 2026-04-2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1로 10	층수	: 29층
층 수	: 지하5층 / 지상24층	분류	: 주택
연 면 적	: 23318.2886(㎡)	분류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제 17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유효기간	: 2026-04-22 ~ 2036-04-22
실적자	: 파인건설(주)	인증등급	
공사장주	: 소희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실내건축물 (에너지소비량 kWh/㎡·년)	실외건축물 (에너지소비량 kWh/㎡·년)	합계 (에너지소비량 kWh/㎡·년)	CO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8.2	69.9	63.3	14.4
냉각	30.7	34.7	25.7	7.1
조명	7.0	4.8	11.9	3.1
합계	75.6	114.8	107.7	26.2

본 인증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12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고지사항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주)엠페이브평택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주)엠페이브평택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이에 따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엠페이브평택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이에 따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엠페이브평택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엠페이브평택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주)엠페이브평택 또는 시공사 파인건설(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당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

(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6. 위탁자 (주)엠페이브퍼펙트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7. 코리아신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엠페이브퍼펙트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파인건설(주)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타(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8.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9. 임대수익보장(보증금 및 월임대료)약정을 포함한 분양 관련 모든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은 코리아신타(주)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 (주)엠페이브퍼펙트가 부담하는 바,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코리아신타(주)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 계약 금액

(단위 : 원)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V.A.T. 포함)
건축 감리	소하건축사사무소	₩884,400,000
전기·정보통신·소방 감리	주식회사 주은에프에스	₩176,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페이브퍼펙트	파인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47, 506호(합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7(둔산동, 206,207호)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31311-0255088	160111-0238968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thecentral45.com>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10, 103호

■ 분양문의 : 031-654-265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